
2020 광주청년정책연구단
오리엔테이션 자료

시작하기 전에

광주광역시와 광주청년센터는 우리시의 청년참여기구인 청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준비함에 있어,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감염병의 확산 아래에서 공공성을 가진 조직 운영에 대한 책임과 사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야하는 어려움과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중 대규모 모임을 갖지 않으면서 청년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핵심 기능을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 고민 끝에 청년의 시정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연구 활동과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농쳐서는 안 될 기능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을 변경·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기다림과 불편, 아쉬움에 공감하며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광주청년정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자의 인사말

안녕하세요? 광주청년센터 서인희입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났으니, 잘 관계 맺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청년정책연구단 운영계획의 바탕은 함께 성장하는 것과 광주청년정책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시하고, 평가하고, 제재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규정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서로를 지키면서 활동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힘이 되겠습니다. 힘이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광주청년 정책연구단
- 기간 : 2020. 6. ~ 12.
- 운영방식 : 10인 이내의 분야별 팀 구성, 온라인 교육 및 팀별 특화 교육, 정책 연구·제안

□ 추진방향

- 6기 청년위원회 신청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관심분야 1순위 ~ 4순위 조사, 각 분야별 팀 구성
- 온라인 필수교육을 통한 청년 역량강화
- 오프라인 소규모 분야별 특화교육 및 시의회 간담회, 정책 연구·제안 활동 지원

□ 연간운영계획

- 온라인 필수교육

★ 모두 함께 해주세요.

- 목적 : 정책 제안자로서 기본소양 교육
- 기간 : 2020. 6. 12. ~ 6. 19. (총 3회)
- 교육내용(안)

일시	방식	교육과정	비고
6. 12.(금) 19:00-21:00	광주청년센터 페이스북 라이브	오리엔테이션 및 청년정책 소개	광주청년센터 서인희 팀장 박수민 센터장
6. 17.(수) 19:00-21:00	광주청년센터 페이스북 라이브	시민참여예산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
6. 19(금) 19:00-21:00	광주청년센터 페이스북 라이브	제안서 작성 실무	참여예산센터 추민승 연구원

○ 팀별 1차 회의 및 연구계획서 작성

★ 일정을 꼭 지켜주세요.

- 내 용 : 팀장 및 간사 선출, 연구계획서 작성 제출
- 작성기간 : 2020. 6. 20.(토) ~ 6. 29.(월)
- 제출기한 : 2020. 6. 30.(화)

○ 프로젝트팀 활동

- 회의운영 : 월 1회
 - 팀별 의제선정 또는 개인별 관심분야에 대해 정책연구 및 아이디어 발굴
 - 월 1회 이상 회의하실 수 있습니다. 팀별로 드리는 상생카드를 사용해서 간식이라도 꼭 챙겨주세요. 다만, 회의비 지급은 월 1회만 가능합니다.
- 시의회 간담회 : 기간 중 필요시 팀별 최대 2회
 - 정책 제안 주체로서의 책임의식 함양 및 거버넌스 구축
 - 팀마다 필요한 지점과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 소관부서 간담회 : 기간 중 필요시
 - 팀마다 필요한 지점과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 팀별 특화 교육

★ 팀별 특성에 따라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팀 내부에서 원하는 바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 목 적 : 팀별 특성에 맞는 특화 교육 운영
- 일 정 : 기간 중 팀별 1회

○ 청년정책 교류활동

★ 대구와의 교류는 우리시의 달빛교류 사업입니다. 제시한 정책교류 토론회는 가안입니다.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 대구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정책교류 토론회(가안)
- 기 간 : 9월~11월(예정)
- 주 제 :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청년의 피해 사례에 대한 공통적인 설문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접근

○ 청년정책 연구 및 정책제안

★ 짧은 기간에 정책제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주청년정책의 더 나은 방향을 위한 모든 조사·연구·활동·제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팀별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 기 간 : 6월~12월
- 주 제 : 청년문제와 관심 있는 주제를 팀별·개인별 선정
- 추진방법 :
 - 관심분야 관련 기 시행중인 청년정책 정보전달
 - 정책연구에 대한 자문 및 추진상황 정기 점검
 - 정책 발굴에 따른 애로 및 요구사항 전달 등
- 정책제안 : 팀별 2건 이상 발굴 원칙

○ 활동성과 보고회 개최

- 시 기 : 2020. 12.
- 내 용 : 활동성과 및 소감 공유 등

□ 월별추진일정

사업내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필수 교육							

팀별 정책 연구·제안							
팀별 특화 교육	기간 중 팀별 1회						
팀별 시의회 간담회	기간 중 필요시 팀별 최대 2회						
소관부서 간담회	기간 중 필요시						
교류 활동 지원				기간 중 1회			
성과보고서 제작·발간							
성과보고회 개최							

※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지원사항

○ 재정지원

- 회의비(개인) : 월 1회 회당 50천원
- 팀별 활동비 : 기간 중 팀별 500천원(상생카드 지급)
- 간담회 지원 : 기간 중 2,240천원
- 교류활동 지원 : 기간 중 6,000천원

○ 행정지원

- (공간지원) 청년센터, 잡(job)카페 등 연구 모임 공간 지원
- (연구지원) 팀별 연구에 필요한 행정자료 제공, 담당부서 또는 시의회 및 기관 간담회 추진

□ 협조사항

○ 활동내용

- 팀별 연구계획서 : ' 20. 6. 30.
- 팀별 회의 개최계획서: 회의 7일전
- 팀별 회의록 : 매월 말

○ 청년정책 제안

- 팀별 정책 제안 발굴 및 의제화 : ' 20. 12.

II 광주청년정책연구단 활동팁

□ 우리의 약속

- 청년센터는 광주청년정책연구단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어려운 지점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 회의 개최 계획안은 개최일 7일전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모든 회의의 시작시간을 지켜주세요. 우리 모두가 바쁜 일상 중에도 가치 있는 활동을 위해 어렵게 낸 시간이니, 서로의 삶이 존중되고 그 열정이 식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지켜주세요.
- 회의록, 활동보고서 등의 증빙자료는 매월 25일~말일까지 원본을 청년센터에 오셔서 제출해주세요. 그렇게 만나서 어려운 점, 필요한 지점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 회의비는 매월 1일~14일에 개인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생기거나 함께 고민하면 좋을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메일이나(githeforest@naver.com) 전화로 (070-4162-4705 서인희) 연락주세요.

□ 예산 집행할 때 지켜야 할 것들

- ① 회의비(개인) : 월 1회 회당 50천원
 - 증빙자료 : 팀별 회의록, 참석자명부, 활동사진
- ② 팀별 활동비 : 연간 500천원(상생카드로 지급)
 - 식비, 다과비
 - 식비와 다과비는 당일 중복 사용 불가
 - 식비 1인 기준 8,000원, 다과비 1인 기준 5,000원
 - 증빙자료 : 활동보고서, 참석자명부, 활동사진, 활동비 영수증

- ③ 간담회 지원 : 연간 2,240천원
- 팀별 신청시 진행, 식비 결재 가능

참고자료 1 청년위원회 청년정책 반영사례

□ 2015 1기 (5건)

-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역청년 간의 연계를 통해 청년에게 취업과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 ‘빛가람 학점제’ 추진
 - 지역대학과 이전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학점제 운영
- 지역 우수 청년상인을 발굴·지원하는 ‘청년상인 경연대회’ 개최
 - 지역에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년상인을 위한 적극적인 브랜딩화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제정 건의 및 공포
- 청년할당제 도입 제안 (청년위원회 참여)
- 청년교통수당 지원 : 구직활동 청년 교통비 지원

□ 2016년 2기 (2건)

- 또래집단 간 진로와 고민을 공유하는 플랫폼 ‘내꿈네꿈’ 개설
 - 청년들의 온라인 소통공간을 운영 등을 위해 구축중인 청년센터의 정보 플랫폼에 반영
- 청년소환제 도입
 - 2017년 ‘청년이 만드는 청춘대학 운영’과 ‘청년과의 대화의 날 운영’ 반영

□ 2017년 3기 (5건)

- 청년위원회 정책역량강화 지원
 - 청년센터 내 청년정책연구 전문인력 충원
- 청년강연자 청해 듣기사업
 - 공직자-지역사회 간 청년들의 삶 공감대 형성

- 시티투어버스 사업 개선
 - 지역청년 대상으로 문화해설사 양성, 활용
- 지역청년 공연(품질) 인증제 도입
 - 지역청년 우수공연 인센티브제도 운영
- 공·폐가를 이용한 청년의 장 마련
 - 도심속 폐가 청년문화 공간으로 확충(중.장기적 추진방안)

□ 2018 4기 (6건)

- 성평등 일자리 인증제
 - 여성재단 정책연구과제로 용역 후, 성평등 일자리 인증절차 마련
- 공유옷장 사업
 - 취업준비생에게 정장 등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19년부터 추진
- 저소득층 심리치료 바우처
 - 청년센터의 '토닥토닥상담' 사업에 반영
- 사각지대 청년 건강검진
 -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사업과 연계 추진
- 찾아가는 청년정책(복지) 교육
 - 청년센터의 청년정책 홍보사업에 반영
- 청년 취업에 관한 법률 교육
 - 청년센터와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광주시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지원

□ 2019년 5기 (6건)

- 광주로 오라! 베이스 캠프
 - 청년센터 '청년공간 교류 및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관내·외 청년 이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광주 청년정책 버스
 - 청년센터의 홍보성 이벤트 사업으로 추진 검토
- 청년식객(광주 청년이 추천하는 대표음식)
 - 내년 청년축제와 음식페스티벌 연계 추진
- 진로멘토 청년소환제
 - 청년센터 사업과 연계 추진
- 광주청년드림정책
 - 추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청년실태조사과 신설 및 실태조사 정례화
 -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 예정('20) TF 또는 자문단 구성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 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p>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p>	
<p>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p> <p>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p> <p>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p> <p>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p>제7조(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p>	<p>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p> <p>②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청년정책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청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p>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p>	<p>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p>
<p>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 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청년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청년정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정보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p>②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p>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⑤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⑦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점검하고,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조정한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⑤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p>제6조(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 기관(이하 "분석·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청년정책 분석·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청년정책 분석·평가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분석·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p> <p>④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7조(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석·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취소의 의사를 밝힌 경우
<p>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p>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p>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청년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지출·부채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심리정서·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정책결정입법과정 등에서의 참여에 관한 사항 9. 취약계층청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본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실태조사는 2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국민이 실태조사 결과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제23조에 따른 청년정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p>
<p>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p>	<p>제9조(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p>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p>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p> <p>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단체에 청년정책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청년정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년정책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p align="center">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p>	<p align="center">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p>
<p>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 	<p>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위촉 비율에 관한 사항 <p>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제4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13조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p>②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을 말한다.</p> <p>제12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p>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p>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p> <p>2.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p> <p>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p> <p>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다.</p> <p>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p> <p>⑥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p> <p>제13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3조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p>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p> <p>3.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 조정 요청 반영 결과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p> <p>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p>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p> <p>제1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p>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p>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p> <p>제16조(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제17조(전문위원회)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분야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자리분야 2. 교육분야 3. 주거분야 4. 생활분야 5. 참여·권리분야 6.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p>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p>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p>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p> <p>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p> <p>제18(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제19조(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0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검토 및 협의·조정 지원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 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② 사무국에 사무국의 장 1명을 두며, 사무국의 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겸임한다.</p> <p>③ 국무조정실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p>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p> <p>⑤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p> <p>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15조(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1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이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분의 1 이상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2분의 1 이상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2분의 1 이상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비율 나.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p>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청년정책을 주로</p>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p>다루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청년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3. 해당 기관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시도지사 소속 청년정책책임관에 한정한다) 4.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의 교육·홍보 5. 해당 기관의 청년 관련 조직의 운영 6. 청년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7. 기관 간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8.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업무
<p>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p>	
<p>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 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장 보칙
	<p>제23조(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통합·연계 및 공유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이하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청년정책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2. 시행계획 3.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p>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p>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수행할 때 관할 행정정보시스템과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4조(업무의 위탁) ① 국무총리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2항에 따른 청년의 날에 관한 각종 행사 2.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p>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p>	<p>제25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p>
<p>제27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p>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p> <p>2. 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p> <p>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p>	
	<p>제26조(청문) 국무총리는 제7조에 따라 분석·평가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무총리(법 제25조 및 이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23조에 따른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부 칙	부 칙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은 이 영 시행 후 설치하거나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위촉 시부터 적용한다.</p>

- [2020. 1. 1.] [조례 제5358호, 2020. 1. 1., 일부개정]
- [시행 2019. 3. 15.] [조례 제5178호, 2019. 3. 15., 일부개정]
- [시행 2018. 3. 1.] [조례 제5053호, 2018. 3. 1., 일부개정]
- [시행 2017. 7. 1.] [조례 제4903호, 2017. 7. 1., 일부개정]
- [시행 2015. 12. 28.] [조례 제4617호, 2015. 12. 28., 제정]

1장 총칙

1조(목적) 조례는 광주광역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3.15>
2.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의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3.1.>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시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청소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한다. <개정 2020.01.01.>

제2장 청년정책의 추진 체계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 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
 - 나. 청년 고용의 촉진 및 안정
 - 다. 청년건강검진의 지원 <신설 2018.3.1.>
 - 라. 청년 창업의 지원 [2018.3.1, 종전 다목에서 이동]
 - 마. 청년의 부채경감 지원 등 생활 안정 [2018.3.1, 종전 라목에서 이동]
 -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2018.3.1, 종전 마목에서 이동]
 -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2018.3.1, 종전 바목에서 이동]
3.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위원회에 매년 보고한다.

제7조(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항 신설 2019.3.15>
- ③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항 이동 2019.3.15>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3. 제9조에 따른 청년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일자리·주택·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2명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4. 제9조에 따른 청년위원회의 의장단
5.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6.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⑪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조(청년위원회)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위원회를 둔다.

② 청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3.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 방안 모색

4.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5.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제8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7. 활동보고서 발간

③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남녀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청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조항 신설 2019.3.15>

⑤ 위원장은 청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⑧ 청년위원회의 전체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3.15>
- ⑨ 청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회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 ⑩ 시의 각 부서는 청년위원회와 분과회의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설명 등의 협조를 하며, 청년위원회의 제안 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⑪ 청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청년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
- ⑫ 그 밖에 청년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장 청년정책의 시책 추진

10조(청년센터)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항 표기 2019.3.15>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 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청년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정에의 참여)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② 시장은 매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 위원의 수를 늘리는 데 노력한다.

제12조(청년의 능력 개발) ① 시장은 청년이 능력·재능·기술을 개발하고 체력·인성·지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연령·성별 간 균형 있게 청년 인재가 양성되도록 노력한다.

제13조(고용 촉진 및 안정) ① 시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와 근로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② 시장은 청년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 문화, 교육, 보육·돌봄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 ③ 시장은 청년 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 ④ 시장은 시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과 정규직화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
-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⑥ 시장은 청년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교통비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7.1.>, <개정 2018.3.1>

1. 삭제<2018.3.1>

2. 삭제<2018.3.1>

3. 삭제<2018.3.1>

13조의2(청년의 건강 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건강검진을 지원한다.

② 청년건강검진의 지원 대상자는 건강검진 해당년도에 시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의료급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건강검진 대상자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건강검진의 필요성 및 효과성, 시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건강검진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청년건강검진의 검사항목, 검진주기, 검진기관, 검진비용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청년건강검진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1.>

제14조(창업 기반 조성) 시장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이 경영하는 청년기업의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 안정)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② 시장은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채경감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년 주거 안정과 부채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7.1.>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문화의 활성화에 노력한다.

시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17조(청년의 권리 보호)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
2. 청년 부채 및 이자 상환, 주거 복지, 취업 지원 등 청년 생활 안정 및 자립 역량 강화 <개정 2017.7.1>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7.1>

제1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7.1>

4장 보칙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청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제19조에서 본조 이동]

부칙<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위원회 및 광주청년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된 청년위원회와 광주청년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서식 1

팀별 연구 계획서

연구계획서

- 팀 명 :
- 연구주제 :
- 팀원 역할분담

이름	담당역할	비고
한정책 박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 총괄 . 모임일정계획, 총무 등 . 현장방문 계획 수립 	팀장 간사

- 연구활동 계획

시기	항목	연구활동내용	비고

활동비 집행계획

시 기	항 목	소요예상액	잔 액	비 고

○○ ○○팀 회의 개최 계획안

I | 회의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
- 주요내용 :

II | 주요 안건

- 팀별 특화교육 계획 논의
 - 청년 ○○정책의 진단과 방향
- 활동 내용 점검
 - 기존 정책 리서치 완료
 - 광주시 ○○정책의 구성과 지원
- 기타 안건
 -

III | 향후 일정

- ○○정책의 공백과 대안 연구
- ○○분야 정책 제안 초안 작성
- ○○분야 정책 제안을 위한 시의회 간담회 계획

IV | 진행 순서

시간	내용	기타 사항
pm 7:30 ~ 7:45	사전등록(출석)	
pm 7:45 ~ 8:45	안건 토의	
pm 8:45 ~ 9:15	향후 계획 논의	
pm 9:15 ~ 9:30	추후 일정 결정 및 마무리	

활동 보고서

일시	2020. . (월) 00:00 ~ 00:00																						
장소																							
참석	.총 ○○명 : 참석 ○/ 불참 ○																						
	.참석자명 :																						
주요 활동 내용																							
<p>◎ 안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별 특화교육 계획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정책의 진단과 방향 ○ 활동 내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정책 리서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 ○○정책의 구성과 지원 ○ 기타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공백과 대안 연구 - ○○분야 정책 제안 초안 작성 - ○○분야 정책 제안을 위한 시의회 간담회 계획 <p>◎ 결과</p> <p>◎ 활동비 사용내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th> <th style="width: 15%;">거래처</th> <th style="width: 20%;">사용목적</th> <th style="width: 15%;">집행액</th> <th style="width: 15%;">집행잔액</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참석자 명부, 활동사진, 활동비 사용 영수증 첨부 ※ 활동비는 정책제안팀 회계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여 사용</p>							거래처	사용목적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거래처	사용목적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팀장

(서명)

관심분야		제안자 (연락처)	
정책구분	제도/조례() · 사업() · 혼합형() · 기타() · 정책대상() · 시행지역()		
제안내용	제안 배경		
	<input type="checkbox"/> 제안내용(최대한 구체적으로)		
	<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		
	<input type="checkbox"/> 소요예산		
	<input type="checkbox"/> 참고사항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및 참고자료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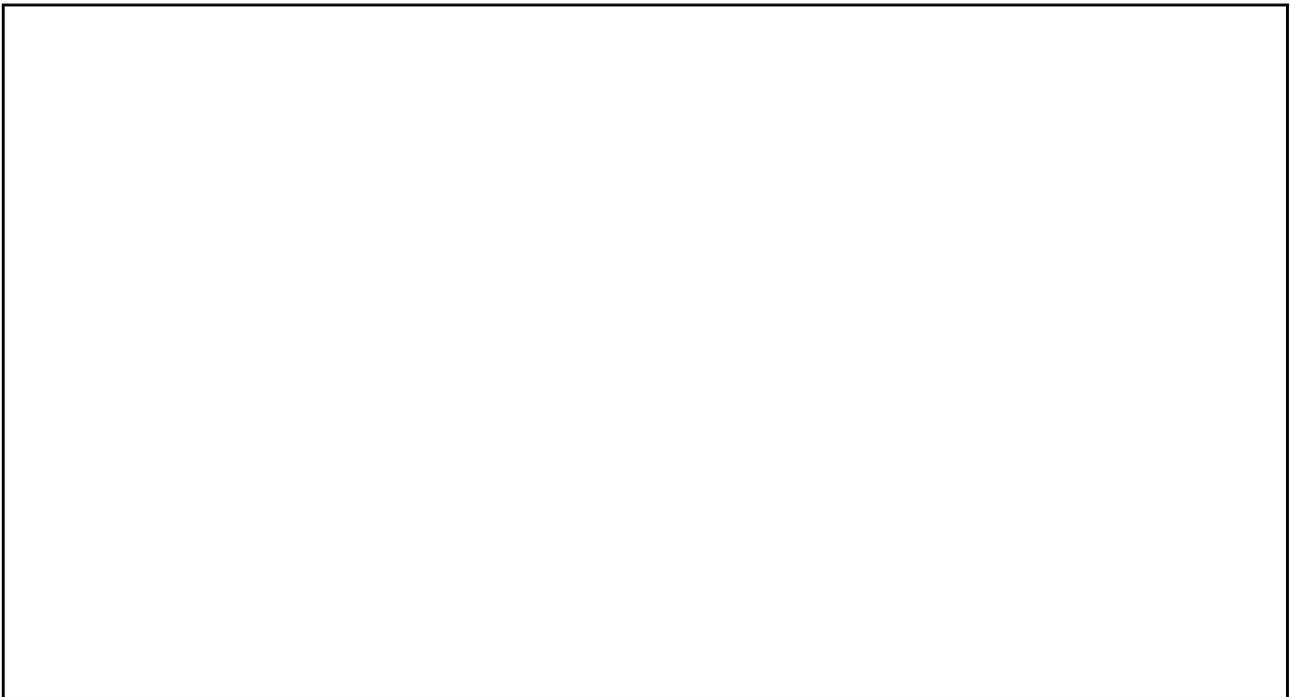
기타서식 일체

참석자 명부

일시 : 20. . . (요일) 00:00~00:00

연번	성명	연락처	서명
1	한정책	010-1234-5678	서명
2			
3			
4			
5			
6			
7			
8			
9			
10			

활동사진



활동비 사용 영수증

회의 참석 확인서

회의 일정	20. 6. ~ 12. (월 1회 회의 진행 예정)
회의 수 당	회의 진행시 월 1회 정액 50,000원
팀 명	○○ 팀
성 명	박청년
주민번호	
연 락 처	
주 소	
입 금 계 좌	박청년 / 카카오뱅크 / 1234-56-7890

회의참석수당 지급 및 세무신고 등 과세 활용을 위한[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회의참석수당 지급 및 세무신고 등 과세 활용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회의참석수당 지급 및 세무 신고 등 과세 활용

2. 수집 및 이용(제공)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 자료(신청서 기재된 가구원, 개인계좌 정보 등) 등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근거주민등록번호수집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보유기간

- 국세청 및 지자체에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 세무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 회의참석수당 지급 및 세무 신고 등 과세 활용, 분쟁대비기간(5년) 동안 이용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의무 관계 등의 확인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함

4. 기타

- 상기 개인정보는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이용 및 제공하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참석 수당 등 지급과 관련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_____ (서명 또는 인)